#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 1. 노인인권 보호

**1) 노인인권이란?**

-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권리

**2) 노인인권 관련 법령.**

- 헌법 제 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노인복지법 제 2조 :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와 능력에 다른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권리를 지님과 동시에 심신의 건강유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3)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권리.**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나.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다.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라.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마.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바.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아.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자.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 2. 노인학대 예방

### 1)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 2) 노인학대 유형

| | | |
|---|---|---|
|  |  |  |
| **신체적학대** | **정서적학대** | **성적학대** |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로 신체적, 정신적손상 및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 | 비난, 모욕, 위협 등 언어/비언어적 행위로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등 의사에 반하는 성적행위 |
|  |  |  |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
| 재산을 빼앗거나, 착취, 경제적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 부양의무를 거부, 불이행, 포기하여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 3)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

-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을 격리
- 증거수집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속히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

### 4) 노인학대 예방 수칙

-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시십시오.
-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 학대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상호존중 수칙

**1.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 요양원 직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아래의 유형과 같은 직원 인권침해를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직원 인권침해 유형**

**① 폭언, 폭행**

-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②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③ 공포심 유발**

- '가만 두지 않겠다'거나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는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④ 무리한 요구**

- 입원 및 행정절차를 대신 진행해 달라거나 요양보호사에게 병원에서 간병을 해달라는 경우.
- 어르신 개인 반찬을 따로 해주라는 등의 업무 외 서비스를 요구
- 우리 부모님에게만 숟가락으로 갈아서 과일을 드려달라 거나, 인삼을 달여 제공하라는 등의 경우

**⑤ 억지주장**

- 고객응대근로자가 (실제 훔치지 않았는데) 물건을 훔쳐갔다고 하는 경우
- (병원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아는데 병원진료가 필요없다고 하는 경우

**⑥ 비인격적 대우**

- 반말로 '너는 내가 고용한 사람인데...'하면서 '저 년' 등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하는 경우

**2) 직원 인권 침해시 대응 : 직원은 인권침해를 당할 시 아래와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응법 | 내용 |
|---|---|
| 1단계<br>자제요청, 즉시경고 | 폭언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합니다. |
| 2단계<br>녹음 고지, 법규위반 공지 | 폭언등을 지속하면 사전 고지 후 녹음, 옥화를 실시합니다. |
| 3단계<br>응대종료, 경찰신고 | 폭언 중지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 중단을 설명하고, 즉시현장에서 자리를 떠납니다. 6하원칙에 의거 무서로 기록하며 필요시 법적대응합니다. |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으로 판단되면 응대하지 않고 바로 경찰(112)에 신고합니다.**